

# 입학사정관윤리강령규정

제 정 2012. 6.  
개 정 2014. 6.

自立, 端正, 篤行의 교훈아래 “미래 사회에 힘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우송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은 긍지와 의지를 지닌 전문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인을 도야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인재 선발에 노력할 것이며 이에 고도의 전문성 확보와 높은 도덕적 책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명정대하게 임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무성을 갖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하나,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철저하게 보안 및 비밀을 유지한다.  
 하나,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청탁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  
 하나, 성별, 종교, 지역, 연령, 경제사회적 위치, 신체적 조건 등에 편견을 갖지 아니한다.  
 하나, 직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 제 1장 총 칙

**제1조(제정목적)** 입학사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의 기준을 강령으로 정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을 준수함으로써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학사정관이란 전임입학사정관, 교수사정관, 전환사정관, 위촉사정관(내부, 외부)를 포함하여 말한다.

## 제 2장 의 무

**제3조(공정성 확보의 의무)** 입학사정관은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혈연·지연·학연이나 성별·빈부·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성 확보의 의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업무와 관련하여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전문성 확보의 의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입학사정관에 대한 모든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밀유지의 의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과정에서 얻은 수험생의 개인정보와 기록, 각종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서약서 제출)** 입학사정관은 윤리강령 준수를 위해 별첨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장 책 무

**제8조(책무)** 입학사정관은 입학상담 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하며, 학생유치의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또 공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만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제9조(활동)** ① 입학사정관은 품위있는 언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고등학교 및 타 대학의 입학 업무 담당자들과 상호협력함으로써 입학사정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사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유사시에 대처해야 한다.

**제10조(직무의 제한)** 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본교에 입학하고자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의 사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입학사정관이 제 1항의 규정 외에 본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지원자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입학업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학처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중 제2조의 개정사항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